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299호

마포로3구역 제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아현동 617-1번지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에 적합한 범위에서 건설부고시 제345호(1979.09.21.)로 재개발구역으로 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412호(1981.11.13.)로 재개발사업계획 결정된 마포로3구마포로역 제1지구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6조에 따라 2020년 제8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심의(2020.06.03.)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을 변경하고,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9일
서울특별시

I.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정비구역 지정조서(변경없음)

구 분	정비사업 명 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마포로3구역 제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마포구 아현동 617-1번지 일대	4,602.88	

※ 본 정비구역은 도시정비법 제17조제1항 및 제84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 준공인가 고시가 있는 날(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전고시가 있을 때를 말함)의 다음날에 해당지역은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함.

2.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4,602.88	－	4,602.88	100.0	
정비기반 시설 등	소 계	－	－	－	－	
획 지	소 계	4,602.88	－	4,602.88	100.0	
	획 지 1	4,602.88	－	4,602.88	100.0	

3.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없음)

구 분		면 적(㎡)			비 율(%)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4,602.88	-	4,602.88	100.0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4,602.88	-	4,602.88	100.0	

4.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가. 도로 결정조서

구 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 정	중로	1	23	20~25	집산 도로	164	아현동 617-70	아현동 795	일반도로	-	05.12.29 서고2005-443호	
기 정	소로	1	12	10	국지 도로	56	아현동 617-49	아현동 617-53	일반도로	-	81.11.13 서고제412호	

나. 정비기반시설 부담계획

구 분	시 설 명	위 치	면 적(㎡)	비고(관리청)
신설	공공청사 (창업센터)	마포구 아현동 617-1번지 일대	연면적 : 4,475.03	지하1층, 복합설치 (서울특별시청)

- 1) 공공청사(토지 및 건축물)은 서울특별시로 귀속되며, 서울특별시청이 운영 및 관리함.
 2) 향후 토지가 및 건축계획 변경 등에 따라 면적·층고·형태는 조정될 수 있으며, 공공청사 세부용도에 대해서는 서울시 기부채납 통합관리시스템에 의해 추후 확정함.

5.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구 분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공동 이용 시설	경로당	획지1	-	증) 125.00	125.00	(199 × 2.5㎡) × 1.25 = 621.88㎡ 이상
	어린이놀이터		-	증) 155.76	155.76	
	주민공동시설		-	증) 534.32	534.32	

※ 향후 건축위원회 심의 및 사업시행인가시 변경될 수 있으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건축법」 등 관련법령 기준 적용.

6.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

구 분	구 역 구 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정비개량계획(동)					비 고
	명 칭	면적(㎡)	명 칭	면적(㎡)		계	존 치	개 수	철거후신축	철거이주	
계	-	4,602.88	-	4,602.88	-	16	-	-	16	-	
변경	마포로3구역 제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4,602.88	획지1	4,602.88	마포구 아현동 617-1번지 일대	16	-	-	16	-	

7. 건축시설계획

■ 획지 및 주택규모 등에 관한 계획

구 분	구 역 구 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주용도	건폐율 (%)	용적율 (%)	높이(m) (최고층수)	비 고
	명 칭	면적(㎡)	명 칭	면적(㎡)						
변경	마포로3구역 제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4,602.88	획지1	4,602.88	마포구 아현동 617-1번지 일대	공동주택	60% 이하	546% 이하	70m이하 (23층 이하)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용	■ 주택공급계획 : 199세대 ■ 전체 건립규모(전용면적 기준)		
	건립규모		세대수
	계		199
	비율(%)		100.0
	85㎡이하	60㎡이하	-
		60㎡ ~ 85㎡이하	199
		85㎡초과	-
	- 전용면적 85㎡ 이하 규모의 주택이 전체 세대수의 80% 이상		
심의완화 사항	-		
건축물의 건축선 등에 관한 계획	• 광로3-293(마포대로) 변 : 건축한계선 5m		

■ 개발가능용적률 등 산정

구 분	산 정 내 용							
토지이용계획	계 (구역면적)	택지 (공동주택)	신설정비 기반시설	공공시설(공공청사)			신설정비 기반시설내 국공유지	택지내 용도폐지 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공유지
				계	환산부지	토지지분		
	4,602.88㎡	4,602.88㎡	-	1,236.75㎡	669.74㎡	567.01㎡	-	291.20㎡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순부담)	• 새로이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 면적 + 공공시설 등 시설물 기부채납 면적 - 새로이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 택지내 용도폐지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공유지 = 1,236.75㎡ - 291.20㎡ = 945.55㎡ (※ 순부담율: 20.54%)							
기준용적률	• 기준용적률 : 300%							
허용용적률 (사업별 인센티브 항목 적용)	• 허용용적률 = 기준용적률 + 인센티브(최대 100%) = 300% + 100% = 400% • 인센티브 = 100% [녹색건축물 인증, 건축물에너지소비 총량제, 신재생에너지 이용시설 50% + 공익시설(개방형라운지) 0.7% + 저층부가로활성화 유도 30% + 방재관리시설 30% = 110.7% (*적용 100%)]							
상한용적률	• 상한용적률 = 허용or기준용적률 × (1 × 가중치 + 1.3 × α) ▶ 대상지 • 준주거지역 (기부채납 20.54%) • 허용용적률 : 400%, 대지면적 : 4,602.88㎡ ▶ 기부채납 내용 (가중치 1.0) •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 945.55㎡ ⇒ 400% × (1 + 1.3 × 1 × 0.2809) ∴ 상한용적률 = 546.06% $\alpha = \text{공공시설부지 제공 면적} / \text{공공시설부지 제공 후 대지면적}$ $= 945.55\text{㎡} / (4,602.88\text{㎡} - 1,236.75\text{㎡})$ $= 0.2809$							
법적상한용적률	-							

※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에 따른 상한용적은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343호(2019.10.17.) “2020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에 의거 2020.6.30. 이전 주민공람공고를 완료한 경우로 종전 운영기준을 적용.

■ 임대주택 및 소형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해당없음) : 200세대 미만

8. 환경보전,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및 환경성 검토결과

가.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환경보전	자연환경	• 절성토의 균형고려, 지형변화의 최소화 • 기존구역 내 녹지율을 향상시키는 녹지면적 확보 • 차폐 및 조경녹지의 확보로 비오톱(biotope) 공간 확장	

재난방지	생활환경	• 도시가스 등 청정연료 사용과 에너지 절약형 주거단지 조성	
	사업시행시 환경영향	•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건설공사장 소음관리요령 등에 의거 저감대책 마련	
	수재해	• 우수유역을 검토하여 구역주변의 우수관망을 충분히 설치토록 하며 구역 내부로의 유입을 최소화한 억제토목 하여 홍수, 수몰 등에 대한 방재계획 수립	
	산사태	• 산사태 우려는 없으나 토질의 종류에 따른 안정구배를 유지토록 하고, 벽면의 상·하단에 배수시설 설치 등을 통한 사면안정과 경관적 처리를 통해 토사의 유출을 방지하고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계획	
	화재	• 구역내 화재발생을 대비한 방화계획은 건축법의 방화에 관한 규정 및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종합적 방재계획 수립	

나. 환경성 검토결과

검토항목	목표기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예측 및 반영사항
1. 생태면적율	30% 이상	•현재 사업대상지는 불투수 포장지역임	•녹지, 틈새투수포장 등을 계획하여 생태면적율 31.44% 확보
2. 녹지네트워크	녹지평가표1	•사업대상지는 불투수 포장지역임	•녹지등을 계획하여 녹지평가지표 1등급 확보함
3. 지형변동	지형·지질 변동 최소화	•대부분 평탄한 지형이나 절·성토로 인해 지형변화와 지하 굴착 등으로 지형변화가 예상됨	•현 지반고를 고려하여 계획하였으며 지하 굴착 시 현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시공 할 계획임
4. 비오톱	비오톱보전 등급 향상	•비오톱유형 현황도는 상업 및 업무지비오톱, 비오톱유형평가도는 5등급, 개별 비오톱 평가도는 평가제외지역임	•조경녹지와 투수성 포장의 조성으로 인해 비오톱의 기능이 향상될 것임
5. 일조	일조침해 최소화	•건축물 신축시 주변건축물에 영향이 예상됨.	•서울시 건축조례에 의거하여 건축물 이격거리 등을 확보함으로써 일조에 대한 영향이 없도록 계획
6. 바람 및 미기후	바람길 확보	•사업대상지 저층 건축물이 밀집되어 바람길이 미확보되어 있음	•녹지 확보 및 건축물간의 거리를 확보하여 바람길 확보
7. 에너지	에너지절약계획 수립	•에너지사용량 증가	•에너지절약성 설계기법 도입
8. 경관	조망권 확보	•주변지역 조망권 보호필요	•스카이라인 등을 고려한 건축배치 조성
9. 휴식 및 여유허간	휴식·여가공간 최대확보	•주변에 휴식·여가공간 부족	•공지, 커뮤니티시설 등을 연결하여 휴식여가공간 조성
10. 보행친화공간	보행자도로 계획수립	•인근학교 등 보행로 연결필요	•도로변 전면공지를 조성하여 보행공간 확충
11. 소음 및 진동	공사시 65dB(A) 이하	•인근도로(마포대로)에 의한 영향 발생 지역	•방음벽, 이중창 등을 이용하여 영향 최소화
12. 폐기물	폐기물 처리	•주거지에서 생활폐기물 발생	•폐기물관리법 등에 의거 저감대책 마련

9. 정비사업 시행계획

구분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비고
				기준	계획	증	
변경	재개발사업	구역지정고시일로부터 4년 이내	(주)인사이트투	-	199	199	

10.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구분	계획내용
소음·진동	• 「공사장 소음·진동 관리지침서, 환경부, 2006.12」에 준하여 공사를 시행

	- 가설방음판넬(3~4m) 설치 - 저소음, 적정 용량의 건설기계를 선택하여 소음·진동 저감
비산먼지	- 공사 시 살수, 세론 및 측면살수시설, 가설방진망 등 설치 - 대기오염 차단기능이 우수한 수종을 선정하여 식재 - 대기오염물질은 청정연료를 사용하도록 계획
일 조	일조 권고치 기준에 적합하게 건축계획 수립
통학로	대상지내 충분한 보행자도로를 확보하여 단지 내 및 주변지역 학생들에게 최단거리의 안전한 통학로를 제공

11.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계획

정비구역 현황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계획			비고
	착공 전	착공 ~ 공사 완료	범죄예방설계 적용	
근린생활시설로 이용중으로 거주세대 없음	- 펜스 설치 및 유지·관리 1일 오전·오후 1회 우범지역 순찰 - 방범용 CCTV 설치 운영	-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규정 준수 안전 시공 - 안전관리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공사비 계상	- 방범용 CCTV는 사각지대 설치 - 공적 공간과 사적 공간 사이에 전이공간을 설치하여 누구나 쉽게 공간의 성격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계획 - 수목의 식재로 사각지대나 고립지가 생기지 않도록 수목의 간격을 적절하게 유지하여 계획	

12. 주민공동체 활성화 방안 및 주민 소득원 개발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II. 지구단위계획 결정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 분	정비사업 명 칭	위 치	면 적(㎡)	비 율(%)	
기정	마포로3구역 제1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마포구 아현동 617-1번지 일대	4,602.88	100.0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가. 용도지역·지구 결정조서

구 분	면 적(㎡)			비 율(%)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4,602.88	-	4,602.88	100.0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4,602.88	-	4,602.88	100.0

나. 기반시설 결정조서

1) 도로 결정조서

구 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 정	중로	1	23	20~25	집산 도로	164	아현동 617-70	아현동 795	일반도로	-	05.12.29 서고2005-443호	
기 정	소로	1	12	10	국지 도로	56	아현동 617-49	아현동 617-53	일반도로	-	81.11.13 서고제412호	

2) 정비기반시설 부담계획

구 분	시 설 명	위 치	면 적(㎡)	비고(관리청)
신설	공공청사 (창업센터)	마포구 아현동 617-1번지 일대	연면적 : 4,475.03	지하1층, 복합설치 (서울특별시장)

- 1) 공공청사(토지 및 건축물)은 서울특별시로 귀속되며, 서울특별시장이 운영 및 관리함.
 2) 향후 토지가 및 건축계획 변경 등에 따라 면적.층고형태는 조정될 수 있으며, 공공청사 세부용도에 대해서는 서울시 기부채납 통합관리시스템에 의해 추후 확정함.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획지	면적(㎡)	비율(%)	비고
변경	획지1	4,602.88	100.0	공동주택

나.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결정조서

1)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계획

구 분	가 구	용 도	비 고
변경	허용용도	획지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제4호 근린생활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 판매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 업무시설	허용용도 외의 용도는 불허

2) 건축물의 밀도계획(건폐율, 용적률, 높이)

가) 건폐율 계획

구 분	지 역	건폐율	비 고
변경	준주거지역	60% 이하	-

나) 용적률 계획

구 분	용 적 률			비 고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변경	300% 이하	400% 이하	546% 이하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사항

구 분	인센티브				비 고
	녹색건축물 인증 건축물에너지소비 총량제 신재생에너지 이용시설	공익시설 (개방형라운지)	저층부 가로활성화 유도	방재관련시설	
변경	50%	0.7%	30%	30%	총 110.7% (*적용 100%)

■ 상한용적률 완화 사항

구 분	공공시설 기부채납	비 고
변경	146%	

다) 높이 계획

구 분	지 역	높이기준	비 고
변경	준주거지역	23층 이하(70m 이하)	

다.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구 분	적용위치	계 획 내 용
건축한계선	획지1	●광로3-293(마포대로) 변 : 건축한계선 5m

라. 기타 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1) 대지내 공지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적용위치	계획내용	비고
전면공지	획지1	●마포대로변 건축한계선 확보 부분은 전면공지로 조성하여 일반인에게 상시 개방하여 보도, 차도, 조경녹지, 휴게공간으로 이용	

2) 환경관리계획

검토항목	목표기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예측 및 반영사항
1. 생태면적율	30% 이상	●현재 사업대상지는 불투수 포장지역임	●녹지, 틈새투수포장 등을 계획하여 생태면적율 31.44% 확보
2. 녹지네트워크	녹지평가표1	●사업대상지는 불투수 포장지역임	●녹지등을 계획하여 녹지평가지표 1등급 확보함
3. 지형변동	지형·지질 변동 최소화	●대부분 평탄한 지형이나 절·성토로 인해 지형변화와 지하 굴착 등으로 지형변화가 예상됨	●현 지반고를 고려하여 계획하였으며 지하 굴착 시 현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시공 할 계획임
4. 비오톱	비오톱보전 등급 향상	●비오톱유형 현황도는 상업 및 업무지비오톱, 비오톱유형평가도는 5등급, 개별 비오톱 평가도는 평가제외지역임	●조경녹지와 투수성 포장의 조성으로 인해 비오톱의 기능이 향상될 것임
5. 일조	일조침해 최소화	●건축물 신축시 주변건축물에 영향이 예상된다.	●서울시 건축조례에 의거하여 건축물 이격거리 등을 확보함으로써 일조에 대한 영향이 없도록 계획
6. 바람 및 미기후	바람길 확보	●사업대상지 저층 건축물이 밀집되어 바람길이 미확보되어 있음	●녹지 확보 및 건축물간의 거리를 확보하여 바람길 확보
7. 에너지	에너지절약계획 수립	●에너지사용량 증가	●에너지절약성 설계기법 도입
8. 경관	조망권 확보	●주변지역 조망권 보호필요	●스카이라인 등을 고려한 건축배치 조성
9. 휴식 및 여유공간	휴식·여가공간 최대확보	●주변에 휴식·여가공간 부족	●공지, 커뮤니티시설 등을 연결하여 휴식 여가공간 조성
10. 보행친화공간	보행자도로 계획수립	●인근학교 등 보행로 연결필요	●도로변 전면공지를 조성하여 보행공간 확충
11. 소음 및 진동	공사시 65dB(A) 이하	●인근도로(마포대로)에 의한 영향 발생 지역	●방음벽, 이중창 등을 이용하여 영향 최소화
12. 폐기물	폐기물 처리	●주거지에서 생활폐기물 발생	●폐기물관리법 등에 의거 저감대책 마련

3) 임대주택 및 소형주택의 건설에 관한 결정조서(해당없음) : 200세대 미만

□ 2020년 제8차('20.06.03.)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 '수정가결'

구분	심의결과	조치계획	반영 여부
수정 사항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계획(100%)은 '친환경' 50%, '가로활성화' 30%, '안전방재' 30%, '공익시설' 0.7%로 수정.	○ 금회 수정가결된 허용용적률 인센티브계획으로 정비계획을 변경 조치하였음.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반영

		<table border="1"> <tr> <td>의무</td><td>친환경</td><td>50%</td></tr> <tr> <td rowspan="3">계획 유도</td><td>가로활성화</td><td>30%</td></tr> <tr> <td>안전방재</td><td>30%</td></tr> <tr> <td>공익시설</td><td>0.7%</td></tr> <tr> <td colspan="2">계</td><td>110.7% (*적용100%)</td></tr> </table>	의무	친환경	50%	계획 유도	가로활성화	30%	안전방재	30%	공익시설	0.7%	계		110.7% (*적용100%)	
의무	친환경	50%														
계획 유도	가로활성화	30%														
	안전방재	30%														
	공익시설	0.7%														
계		110.7% (*적용100%)														
조건 사항	1. 공공기여계획(창업센터 1,236.75㎡) 관련 순부담률(20.54%)은 유지하되, 경제정책실 및 여성가족정책실 등과 협의를 거쳐 '지역 거점형 키움센터' 로의 유도 조정 필요성을 검토할 것.	○ 여성가족실 협의 결과 '지역 거점형 키움센터'는 인근 신촌지역(마포) 4-15지구에 입지예정으로 대상지는 당초 공공기여계획(창업센터)을 유지하는 것으로 정비계획에 반영하였음.	반영													
	2. 허용용적률 인센티브계획 관련 2-1. 금회 신규 계획한 '공익시설' (0.7%)은 향후 유지·관리 담보 측면에서 기부채납되는 공공시설계획과 연계하여 해당 주관부서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 공익시설인 개방형라운지가 기부채납 공공시설(창업센터)에 제공되는 시설임을 조건으로 사업시행인가 및 준공허가 하고, 분양 계약서상에 이를 명기하여 향후 이용 및 유지·관리상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음.	반영													
	2-2. 안전·방재(30%) 계획 관련 투수성 포장 면적 산정 및 적용 비율 관련 재검토 할 것. ※ 향후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재정비시 공익시설의 보상계수(0.1)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할 것	○ 구역내 투수성 포장 면적을 1,583.68㎡로 계획 생태면적률이 공동주택 기준 30% 이상 되도록 조경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계획에 반영하였음.	반영													
	3. 교통처리계획 관련 차량진출입구 위치는 북측 도로변으로 조정 검토하고, 대상지 일대 교통량은 실효성있게 재검토할 것.	○ 차량진출입구를 북측 도로변으로 조정시 4지교차로 생성에 따른 신호운영이 필요하고, 정지선에서 마포대로까지의 대기길이가 약 35m에 불과하여 퇴근시간 진입차량 증가 및 신호대기시간 증가로 대기차량이 마포대로 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됨. 교차로 지체도 또한 현재 계획안시 약 9초/대 수준에서 약 26초/대 수준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서측 일방도로변으로 계획한 사항임. ○ 차량진출입구 등 교통처리계획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향후 사업시행인가 전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득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겠음.	반영													

III. 관련도면 : 붙임 참조

1. 정비구역 결정도
2. 용도지역 결정도
3.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4. 정비계획 결정도
5.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 첨부된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IV.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도서 : 생략

V. 열람장소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활성화과(☎02-2133-4646), 마포구 도시계획과(☎02-3153-9363)에 관계서류를 비치 및 열람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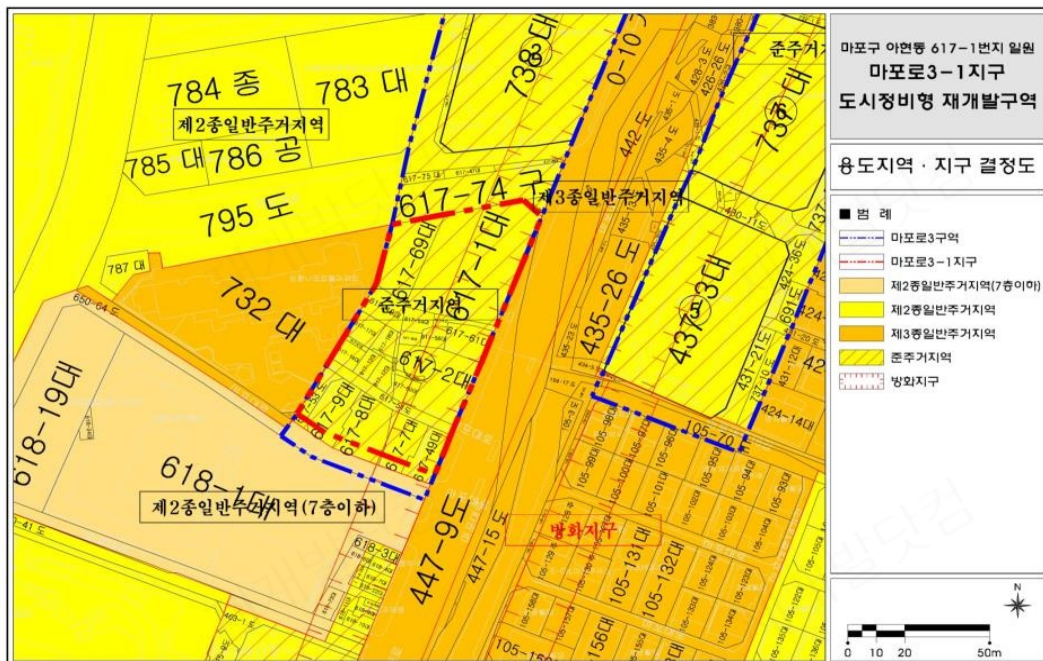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VI.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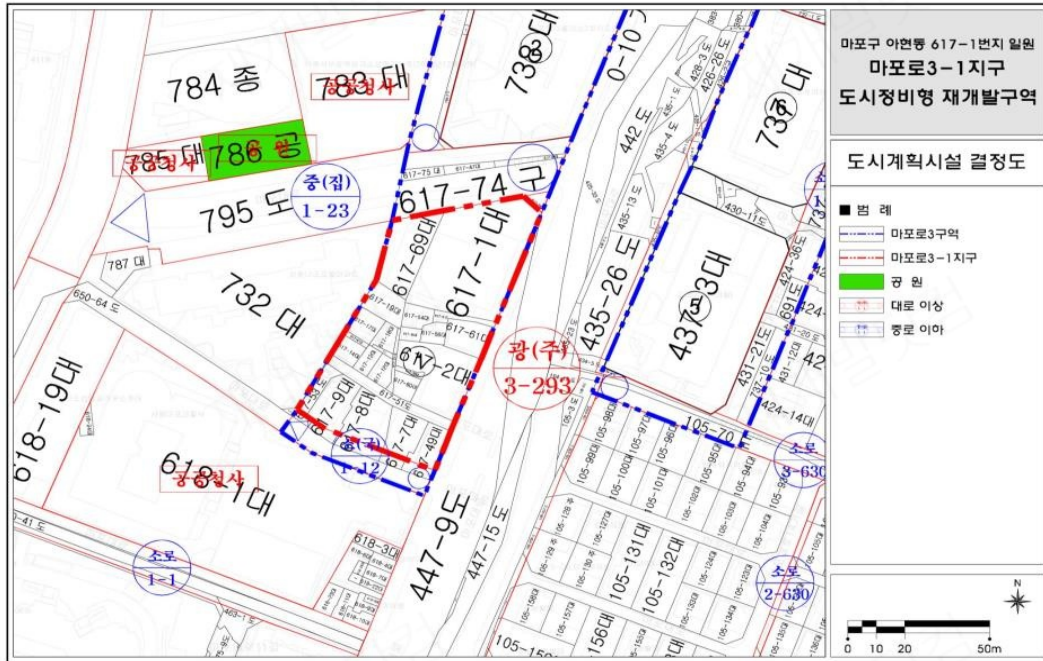
☐ 정비구역 결정도



☐ 용도지역 결정도



☐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 정비계획 결정도

